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H)

투자설명서

효력발생일 : 2015 년 12 월 1 일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5.10.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12.0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 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87686
A	86597
C1	86598
C2	98449
C3	98450
C4	98451
C-e	86599
C-f	86600
C-w	86601
I	86602
S	AO849
A-e	AP631
C-p	AZ933
S-p	AZ934
S-i	AZ935
C-Rp	B445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87686
A	86597
C1	86598
C2	98449
C3	98450
C4	98451
C-e	86599
C-f	86600
C-w	86601
I	86602
S	AO849
A-e	AP631
C-p	AZ933
S-p	AZ934
S-i	AZ935
C-Rp	B445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8.09.18.	최초 설정												
2008.11.14.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등록												
200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로 전환 -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광업주 주식투자신탁-자(H)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2010.03.16.	투자신탁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th> <th style="text-align: center;">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th> <th style="text-align: center;">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th> <th style="text-align: center;">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td> </tr> </tbody> </table>	변경전		변경후		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변경전		변경후											
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010.05.03.	종류 C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인하 및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 변경												

2011.01.10.	(1) 종류 C 수익증권 CDSC(이연판매보수) 적용 - 종류 C 수익증권 명칭변경: 종류 C 수익증권(변경 전) -> 종류 C1 수익증권(변경 후) - 종류 C2, C3 및 C4 수익증권 신설 (2)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보수율 인하 및 정률식 적용
2011.1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1.22.	모투자신탁의 주된투자대상자산의 변경(주식 →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자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14.03.04.	펀드 온라인 코리아 전용 클래스 (S) 신설, 온라인 전용 클래스 (A-e) 신설
2015.02.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03.19	연금 클래스 (C-p), 펀드 온라인 코리아 전용 연금 클래스 (S-p), 펀드 온라인 코리아 전용 기관 클래스 (S-i) 신설
2015.07.01	퇴직연금 클래스 (C-Rp) 신설
2015.12.01	비교지수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02-751-055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15년 10월 31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조동혁	1963년	본부장	24개	5,155억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11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	------

조동혁, 이동찬	최초 설정 이후. ~ 2011.11.10.
조동혁	2011.11.11 ~ 현재

주 1) 2011년 11월 기준 최근 3년 간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및 수수료율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주2)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4)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 시 제투자자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주 1)	총보수·비용(주 2)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40%) 포함) (주 3)	증권거래비용(주 4)
A	0.5000	1.0000	0.0400	0.0250	0.0000	1.5650	1.9650	0.0000
C1	0.5000	1.5000	0.0400	0.0250	0.0000	2.0650	2.4650	0.0000
C2	0.5000	1.3700	0.0400	0.0250	0.0000	1.9350	2.3350	0.0000
C3	0.5000	1.2300	0.0400	0.0250	0.0000	1.7950	2.1950	0.0000
C4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0	0.0000
C-e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0	0.0000
C-f	0.5000	0.0500	0.0400	0.0250	0.0000	0.6150	1.0150	0.0000
C-w	0.5000	0.0200	0.0400	0.0250	0.0000	0.5850	0.9850	0.0000
I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0	0.0000
S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0	0.0000
A-e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0	0.0000
C-p	0.5000	0.6000	0.0400	0.0250	0.0000	1.1650	1.5650	0.0000
S-p	0.5000	0.1800	0.0400	0.0250	0.0000	0.7450	1.1450	0.0000
S-i	0.5000	0.0120	0.0400	0.0250	0.0000	0.5770	0.9770	0.0000
C-Rp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0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성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4.09.18.~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월드광업주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14.09.18. ~ 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100% 이하)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투자목적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 100%)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전략 사항 철광석 및 석탄과 같은 기초금속 및 산업광물의 생산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채광 및 금속회사의 주식에 펀드의 70% 이상을 투자함. 또한 기타 귀금속 또는 광물 채광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해당 투자 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

라. 전환형 구조 (엄브렐라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World Mining Fund(이하 ‘BGF 월드광업주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채권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한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비중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에의 투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유동성자산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p>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물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선물 및 통화스왑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에 한함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수익증권, 채권 및 유동성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모수익증권, 채권 및 유동성자산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용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파생상품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p>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p>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종목 투자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u> 	
	<p>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파생상품 투자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신탁재산의 100%이하)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3) 국내채권에의 투자는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래에 한하며,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광업주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90%) + (Call × 10%)**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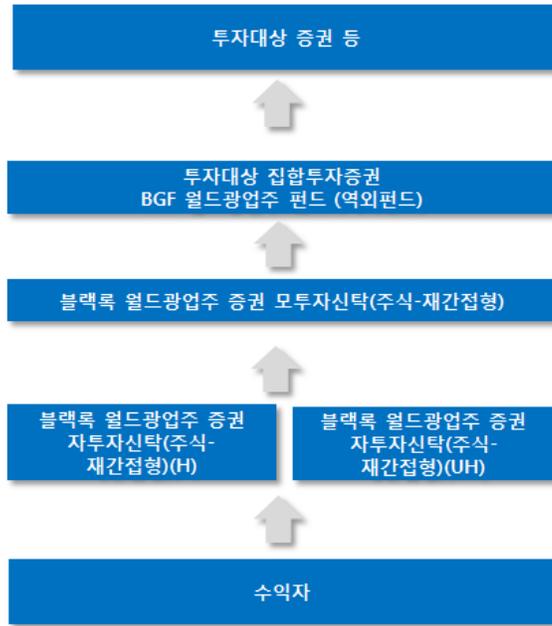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글로벌 광업주 관련 증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 100%**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월드광업주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유케이) 리미티드)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라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7년 03월 24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 철광석 및 석탄과 같은 기초금속 및 산업광물의 생산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채광 및 금속회사의 주식에 펀드의 70% 이상을 투자함. 또한 기타 귀금속 또는 광물 채광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 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당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과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괄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p>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재간접투자위험</p>	<p>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금리변동위험</p>	<p>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 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가격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투자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p>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p>

<p>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한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재투자위험</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 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p>
<p>후강통을 통한 투자 관련 위험</p>	<p>2015년 12월 18일부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통*을 통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 후강통 : 후강통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통은 후구통과 강구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통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통 펀드들 포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에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구통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로 후강통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p> <p>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이 수반됩니다.</p> <p>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통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특히, 해당 쿼터 잔여분이 소진되거나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통 펀드가 후강통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통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과세위험 2014년 11월 14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해외투자자들(RQFII 투자자들 포함)이 후강통을 통하여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결과 펀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p> <p>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통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옴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통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 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 상 후강통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통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p> <p>운영위험 후강통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정보기술 수용력, 위험관리 및 해당 증권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p> <p>두 시장 간의 증권 체제 및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p>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 주식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통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통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통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증권거래소는 후강통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통을 통한 교차매매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통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통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당 투자신탁은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5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 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세부내용
1 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2 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3 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국공채를 비롯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회사채,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계약상 국공채 및 MMF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	-----------------------------------

주 1)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블랙록자산운용(주)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주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동비율은 실제 편입비율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 4)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재간접형구조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당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투자대상의 비율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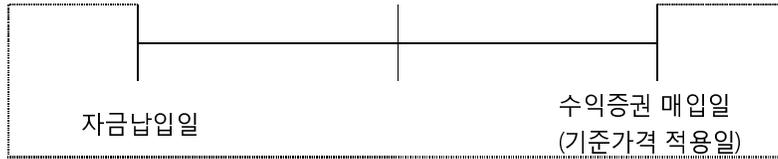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종류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가입자
종류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가입자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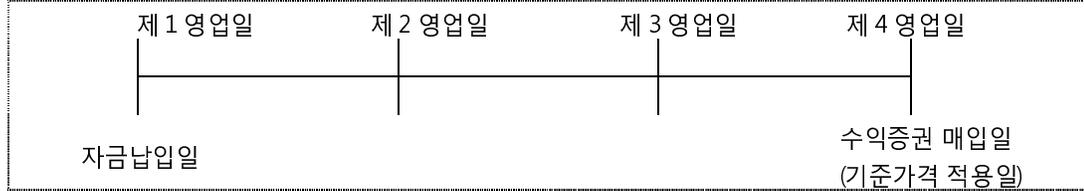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제 1 영업일	제 2 영업일	제 3 영업일
---------	---------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신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판매수수료

종류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종류 A-e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종류 C1	없음	없음
종류 C2	없음	없음
종류 C3	없음	없음
종류 C4	없음	없음
종류 C-e	없음	없음
종류 C-w	없음	없음
종류 I	없음	없음
종류 C-f	없음	없음
종류 S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주2)
종류 C-p	없음	없음
종류 S-p	없음	없음

종류 C-Rp	없음	없음
종류 S-i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상기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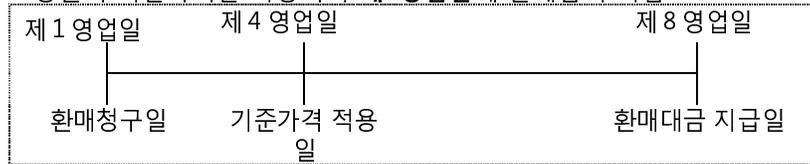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종류	부담비율(연간)
종류 A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A-e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C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w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I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f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S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C-p	없음
종류 S-p	없음
종류 C-Rp	없음
종류 S-i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부과기준	환매시

주 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시 편입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b.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c.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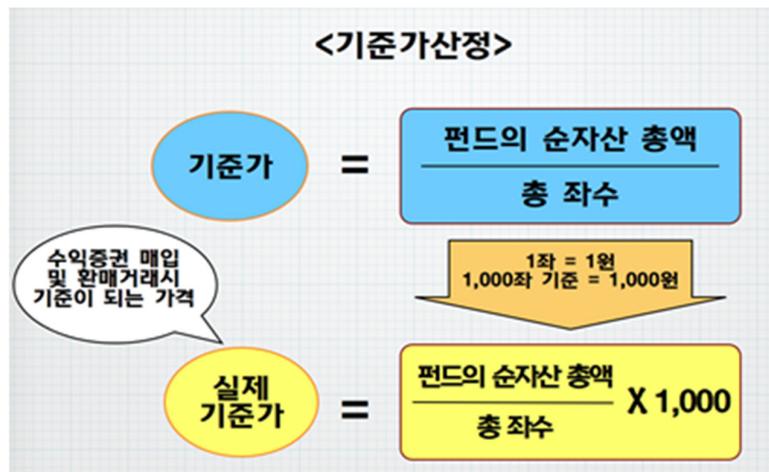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 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투자집합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2개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다만,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 외화표시 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위의 기준가격 또는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격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사경영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운용본부장, 관리담당임원 (2) 위 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Operations) (3) 위 원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는 Operations Team 으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2)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4)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 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주 1)	총보수·비용 (주 2)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40%) 포함) (주 3)	증권거래비용 (주 4)
A	0.5000	1.0000	0.0400	0.0250	0.0000	1.5650	1.9650	0.0000
C1	0.5000	1.5000	0.0400	0.0250	0.0000	2.0650	2.4650	0.0000
C2	0.5000	1.3700	0.0400	0.0250	0.0000	1.9350	2.3350	0.0000
C3	0.5000	1.2300	0.0400	0.0250	0.0000	1.7950	2.1950	0.0000
C4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0	0.0000
C-e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0	0.0000
C-f	0.5000	0.0500	0.0400	0.0250	0.0000	0.6150	1.0150	0.0000
C-w	0.5000	0.0200	0.0400	0.0250	0.0000	0.5850	0.9850	0.0000
I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0	0.0000
S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0	0.0000
A-e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0	0.0000
C-p	0.5000	0.6000	0.0400	0.0250	0.0000	1.1650	1.5650	0.0000
S-p	0.5000	0.1800	0.0400	0.0250	0.0000	0.7450	1.1450	0.0000
S-i	0.5000	0.0120	0.0400	0.0250	0.0000	0.5770	0.9770	0.0000
C-Rp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0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의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4.09.18.~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월드광업주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피투

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4.09.18. ~ 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1.0%로 가정) 포함]	303	741	1,224	2,661
종류 C1,C2,C3,C4 수익증권	253	764	1,264	2,751
종류 C-e 수익증권	296	718	1,185	2,571
종류 C-f 수익증권	207	651	1,141	2,597
종류 C-w 수익증권	207	651	1,141	2,597
종류 I 수익증권	102	320	561	1,277
종류 S 수익증권	99	311	544	1,239
종류 A-e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5%로 가정) 포함]	147	462	810	1,843
종류 C-p 수익증권	171	433	721	1,578
종류 S-p 수익증권	115	361	633	1,440
종류 S-i 수익증권	98	308	540	1,229
종류 C-Rp 수익증권	147	462	810	1,84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부담비율(연간)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1, C2, C3, C4, C-e, C-f, C-w, I,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1회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전환 수수료	없음	없음	-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3)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집합투자 업자보수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판매회사 보수	1.0000	1.5000	1.3700	1.2300	1.1000	1.1000	0.0500	0.0200	0.5000	0.0300	최초설정일 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신탁업자 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모투자신탁 의 기타비용 포함) ^{주 2)}	0.0000	0.0200	0.0182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주 3)	1.5650	2.0850	1.9532	1.8150	1.6850	1.6850	0.6350	0.6050	1.0850	0.6150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4%) 포함) (^{주 4)})	1.9650	2.4850	2.3532	2.2150	2.0850	2.0850	1.0350	1.0050	1.4850	1.0150	
증권거래비 용(모투자신 탁의 증권거래비 용 포함) ^{주 5)}	0.0736	0.0052	0.1388	0.1530	0.0411	0.0763	0.0052	0.0052	0.0052	0.0000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의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4.09.18.~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월드광업주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14.09.18. ~ 2015.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2015.09.17)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0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 으로 함

-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및 S-p)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단,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관련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단위 : 좌, 원)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5기(2012.09.18 ~ 2013.09.17.)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6기(2013.09.18 ~ 2014.09.17.)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7기(2014.09.18 ~ 2015.09.17.)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50917	20140917	20130917
I. 운용자산	65,662,526,522	120,503,966,807	169,219,195,160
증권	63,927,559,411	117,072,776,799	166,591,409,226
현금 및 예치금	1,734,967,111	3,431,190,008	2,627,785,934
II. 기타자산	1,432,359,347	3,331,480,627	8,335,180,250
자산총계	67,094,885,869	123,835,447,434	177,554,375,410
II. 기타부채	847,408,724	4,488,997,649	4,174,359,468
부채총계	847,408,724	4,488,997,649	4,174,359,468
I. 원본	192,965,848,040	198,629,573,553	280,818,289,751
II. 수익조정금	4,110,350,363	33,382,220,835	27,935,684,945
III. 이익잉여금	-130,828,721,258	-112,665,344,603	-135,373,958,754
자본총계	66,247,477,145	119,346,449,785	173,380,015,942
I. 운용수익	-50,128,371,902	-2,795,010,454	-58,802,108,628
이자수익	39,415,589	61,994,342	178,666,249
매매/평가차익(손)	-50,168,277,402	-2,861,422,611	-58,984,909,023
기타이익	489,911	4,417,815	4,134,146
II. 운용비용	1,417,225,588	2,429,337,145	4,521,229,580
관련회사보수	1,399,776,566	2,405,055,257	4,467,675,891
기타비용	17,449,022	24,281,888	53,553,689
III. 당기 순이익	-51,545,597,490	-5,224,347,599	-63,323,338,208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57,250,800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주 1) 종류형 수익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단일 대차대조표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 등은 종류 수익증권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50917	20140917	20130917
I. 운용자산	65,662,526,522	120,503,966,807	169,219,195,160
(1) 현금 및 예치금	1,734,967,111	3,431,190,008	2,627,785,93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34,967,111	3,431,190,008	2,627,785,934
(3) 유가증권	63,927,559,411	117,072,776,799	166,591,409,226
수익증권	63,927,559,411	117,072,776,799	166,591,409,226
II. 기타자산	1,432,359,347	3,331,480,627	8,335,180,25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50,251,540	1,307,858,240
정산미수금	1,431,422,809	30,820,776	5,717,521,814
미수이자	936,538	2,946,511	2,470,096
기타자산		1,647,461,800	1,307,330,100
자산총계 (I + II)	67,094,885,869	123,835,447,434	177,554,375,410
III. 기타부채	847,408,724	4,488,997,649	4,174,359,468
정산미지급금	494,237,134	1,682,879,451	535,934,394
해지미지급금	63,196,801	655,577,696	1,526,074,260
미지급이익분배금	63,196,801	655,577,696	1,526,074,260
수수료미지급금	289,512,799	499,699,702	803,589,164
기타미지급금	461,990	589,260	903,410
기타부채		1,650,251,540	1,307,858,240
부채총계 (I + III)	847,408,724	4,488,997,649	4,174,359,468
IV. 원본	192,965,848,040	198,629,573,553	280,818,289,751
원본액	192,965,848,040	198,629,573,553	280,818,289,751
V. 이익잉여금	-130,828,721,258	-112,665,344,603	-135,373,958,754
이월이익잉여금	-79,283,123,768	-107,440,997,004	-72,050,620,546
당기순이익	-51,545,597,490	-5,224,347,599	-63,323,338,208
VI. 설정조정금	-26,136,513,781	-14,476,256,442	-21,591,668,406
VII. 해지조정금	30,246,864,144	47,858,477,277	49,527,353,351
자본총계 (I + III + V + VI + VII)	66,247,477,145	119,346,449,785	173,380,015,942
[종류(판매)펀드별 순자산]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48,694,525,177	92,806,096,237	134,124,136,283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1)	1,241,708,538	756,160,004	984,912,227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2)	4,449,828,844	7,026,537,207	8,872,337,167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3)	787,622,929		70,286,406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4)	1,911,522,410	3,376,288,171	3,488,251,751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5)	707,236,357	320,537,372	460,439,971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6)	181,135,001	376,131,914	17,491,214,184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7)	6,944,066,683	14,605,920,345	7,888,437,953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93,084,924	56,079,475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222,128,750	22,699,06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	910,786,977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103,830,555		
[종류(판매)펀드별 좌수]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148,278,129,626	159,124,124,049	221,435,878,797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1)	3,567,832,837	1,217,055,775	1,522,799,926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2)	13,767,205,704	12,228,361,984	14,850,992,201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3)	1,069,107,976	0	67,563,211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4)	5,0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5)	2,028,224,991	515,510,543	710,442,257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6)	516,551,820	602,423,114	26,912,225,576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7)	16,789,258,644	19,861,873,419	10,318,387,783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167,052,991	57,143,264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397,717,339	23,081,405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	1,247,655,775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137,110,337		
[종류(판매)펀드별 기준가격]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328.40	583.23	605.7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1)	348.03	621.30	646.78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2)	323.22	574.61	597.42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3)	1,000.00	1,000.00	1,000.0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4)	736.71	1,000.00	1,040.31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5)	382.30	675.26	697.65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6)	348.70	621.79	648.1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7)	350.66	624.37	649.94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413.60	735.37	764.5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557.22	981.38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A-)	558.51	983.43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C-)	730.00		
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H)(S-)	757.28		

다. 손익계산서

주 1) 종류형 수익증권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계산값(순이익 합계/종류 수익증권 좌수 합계)입니다.

손익계산서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40918-20150917	20130918-20140917	20120918-20130917
I. 운용수익	-50,128,371,902	-2,795,010,454	-58,802,108,628
(1) 투자수익	39,905,500	66,412,157	182,800,395
이자수익	39,415,589	61,994,342	178,666,249
기타이익	489,911	4,417,815	4,134,146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27,623,425,442	22,282,406,137	37,670,606,225
파생상품매매차익	13,333,867,657	21,338,571,765	36,588,893,857
수익증권매매차익		615,528,926	
외환거래차익	14,289,557,785	328,305,446	1,081,712,368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77,791,702,844	25,143,828,748	96,655,515,248
파생상품매매차손	24,106,891,205	12,512,979,342	28,806,248,942
수익증권매매차손	53,465,695,184	5,306,287,619	60,346,884,105
외환거래차손	219,116,455	7,324,561,787	7,502,382,201
II. 운용비용	1,417,225,588	2,429,337,145	4,521,229,580
운용수수료	445,850,588	838,976,111	1,979,718,267
판매수수료	895,965,441	1,465,018,196	2,289,985,827
수탁수수료	35,668,027	63,559,889	131,981,203
사무수탁수수료	22,292,510	37,501,061	65,990,594
감사인보수비	2,640,000	3,300,000	3,520,000
기타비용	14,809,022	20,981,888	50,033,689
III. 당기순이익 (I - II)	-51,545,597,490	-5,224,347,599	-63,323,338,208
* 총좌수	192,965,848,040	198,629,573,553	280,818,289,751
* 당기순이익 (좌당 or 1000좌당)	-267.12	-26.30	-225.5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종류 모								
20120918 - 20130917	341,147,857,617	341,147,857,617	71,063,333,972	53,322,564,844	151,133,080,328	111,197,630,097	261,078,111,261	283,272,792,364
20130918 - 20140917	261,078,111,261	261,078,111,261	43,047,467,920	28,628,521,722	120,727,419,025	80,142,047,184	183,398,160,156	209,564,585,799
20140918 - 20150917	183,398,160,156	183,398,160,156	48,475,569,018	24,615,714,032	54,130,316,905	27,777,902,740	177,743,412,269	180,235,971,448
종류 A								
20120918 - 20130917	287,513,864,976	287,513,864,976	27,587,154,326	18,498,273,446	93,665,140,505	61,955,316,019	221,435,878,797	244,056,822,403
20130918 - 20140917	221,435,878,797	221,435,878,797	17,219,620,820	10,480,000,083	79,531,375,568	47,794,259,486	159,124,124,049	184,121,619,394
20140918 - 20150917	159,124,124,049	159,124,124,049	33,739,543,741	15,289,628,572	44,585,538,164	20,353,929,741	148,278,129,626	154,059,822,880
(A-e)								
20140523 - 20140917	0	0	52,516,368	56,769,111	29,434,963	31,185,334	23,081,405	25,583,777

20140918 – 20150917	23,081,405	23,081,405	523,941,897	398,822,406	149,305,963	105,786,379	397,717,339	316,117,432
종류 C1								
20120918 – 20130917	739,519,424	739,519,424	2,707,726,138	1,943,551,964	1,924,445,636	1,404,446,111	1,522,799,926	1,278,625,277
20130918 – 20140917	1,522,799,926	1,522,799,926	2,474,615,186	1,618,689,583	2,780,359,337	1,812,455,828	1,217,055,775	1,329,033,681
20140918 – 20150917	1,217,055,775	1,217,055,775	4,507,334,320	2,155,708,895	2,156,557,258	934,242,165	3,567,832,837	2,438,522,505
(C2)								
20120918 – 20130917	36,549,072,990	36,549,072,990	2,532,975,220	1,907,574,970	38,371,605,953	29,524,372,942	710,442,257	8,932,275,018
20130918 – 20140917	710,442,257	710,442,257	970,822,492	616,532,505	1,165,754,206	741,523,772	515,510,543	585,450,990
20140918 – 20150917	515,510,543	515,510,543	2,217,244,732	962,239,473	704,530,284	321,950,487	2,028,224,991	1,155,799,529
(C3)								
20120918 – 20130917	13,720,766,335	13,720,766,335	35,568,438,701	27,246,870,649	22,376,979,460	15,937,659,238	26,912,225,576	25,029,977,746
20130918 – 20140917	26,912,225,576	26,912,225,576	1,468,335,134	927,541,239	27,778,137,596	17,549,017,790	602,423,114	10,290,749,025
20140918 – 20150917	602,423,114	602,423,114	673,198,147	309,814,355	759,069,441	365,168,773	516,551,820	547,068,696
(C4)								
20120918 – 20130917	2,321,579,710	2,321,579,710	10,467,861,608	8,940,552,760	2,471,053,535	2,006,009,104	10,318,387,783	9,256,123,366
20130918 – 20140917	10,318,387,783	10,318,387,783	18,838,654,328	14,000,698,638	9,295,168,692	7,020,159,289	19,861,873,419	17,298,927,132
20140918 – 20150917	19,861,873,419	19,861,873,419	1,685,321,200	949,117,291	4,757,935,975	2,753,154,954	16,789,258,644	18,057,835,756
(C-e)								
20120918 – 20130917	15,803,782,458	15,803,782,458	3,494,584,745	2,230,248,543	4,447,375,002	2,905,636,119	14,850,992,201	15,128,394,882
20130918 – 20140917	14,850,992,201	14,850,992,201	2,868,226,122	1,714,079,168	5,490,856,339	3,260,245,440	12,228,361,984	13,304,825,929
20140918 – 20150917	12,228,361,984	12,228,361,984	4,968,181,273	2,191,613,252	3,429,337,553	1,517,820,224	13,767,205,704	12,902,155,012
(C-f)								
20130918 – 20140917	0	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4,421,889	0	578,111
(C-w)								
20120918 – 20130917	13,099,610	13,099,610	67,563,211	67,563,211	13,099,610	8,906,817	67,563,211	71,756,004

20130918 - 20140917	67,563,211	67,563,211	0	0	70,286,352	74,500,721	0	-4,214,315
20140918 - 20150917	0	0	1,280,284,694	1,324,812,458	211,176,718	189,431,348	1,069,107,976	1,135,381,110
(I)								
20120918 - 20130917	5,000,000,000	5,000,000,000	0	0	0	0	5,000,000,000	5,000,000,000
20130918 - 20140917	5,000,000,000	5,000,000,000	0	0	0	0	5,000,000,000	5,000,000,000
20140918 - 20150917	5,000,000,000	5,000,000,000	0	0	0	0	5,000,000,000	5,000,000,000
(S)								
20140425 - 20140917	0	0	58,594,123	60,817,750	1,450,859	1,577,086	57,143,264	59,240,664
20140918 - 20150917	57,143,264	57,143,264	188,153,949	139,625,881	78,244,222	58,200,783	167,052,991	138,568,362
(C-p)								
20150325 - 20150917	0	0	1,331,000,070	1,264,068,364	83,344,295	69,338,209	1,247,655,775	1,194,730,155
(S-p)								
20150407 - 20150917	0	0	161,894,356	154,133,651	24,784,019	23,936,685	137,110,337	130,196,966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2015년 9월 17일 현재, 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종류(A)	-43.69	-26.37	-25.37	-17.64	-14.70
종류(C1)	-43.98	-26.64	-25.67	-18.00	-10.22
종류(C-e)	-43.75	-26.45	-25.47	-17.79	-14.92
종류(C-w)					-5.61
종류(I)	-43.38	-25.97	-24.98		-16.48
종류(C2)	-43.92	-26.65	-25.65		-22.46
종류(C3)	-43.84	-26.55	-25.55		-22.35
종류(C4)	-43.76	-26.45	-25.45		-19.89
종류(S)	-43.22				-34.14
종류(A-e)	-43.21				-35.61
종류(C-p)					-47.74

종류(S-p)					-46.14
비교지수	-39.11	-21.67	-21.86	-14.37	-6.57

주 1)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90%) + (Call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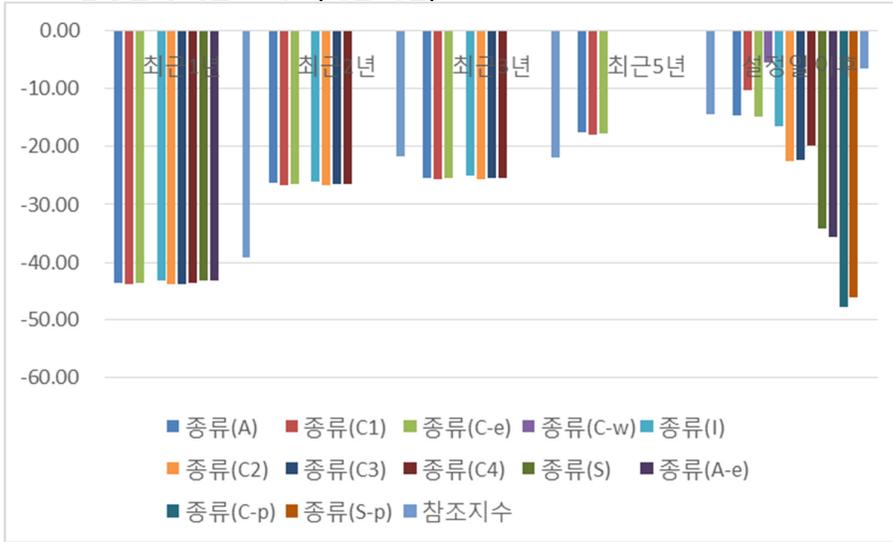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15년 12월 1일자로 (Euromoney Global Mining Index× 90%) + (Call × 10%) 에서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 90%) + (Call × 10%)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2015년 9월 17일 현재, 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A)	-43.69	-3.71	-23.33	-14.84	7.06
종류(C1)	-43.98	-3.94	-23.68	-15.25	6.55
종류(C-e)	-43.75	-3.82	-23.47	-15.06	6.78
종류(I)	-43.38	-3.21	-22.94		
종류(C2)	-43.92	-4.06	-23.61	-15.16	-13.04
종류(C3)	-43.84	-3.93	-23.50	-15.04	-12.95
종류(C4)	-43.76	-3.81	-23.40	-0.19	
종류(S)	-43.22				
종류(A-e)	-43.21				
비교지수	-39.11	0.77	-22.23	-10.88	8.24

주 1) 비교지수: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90%) + (Call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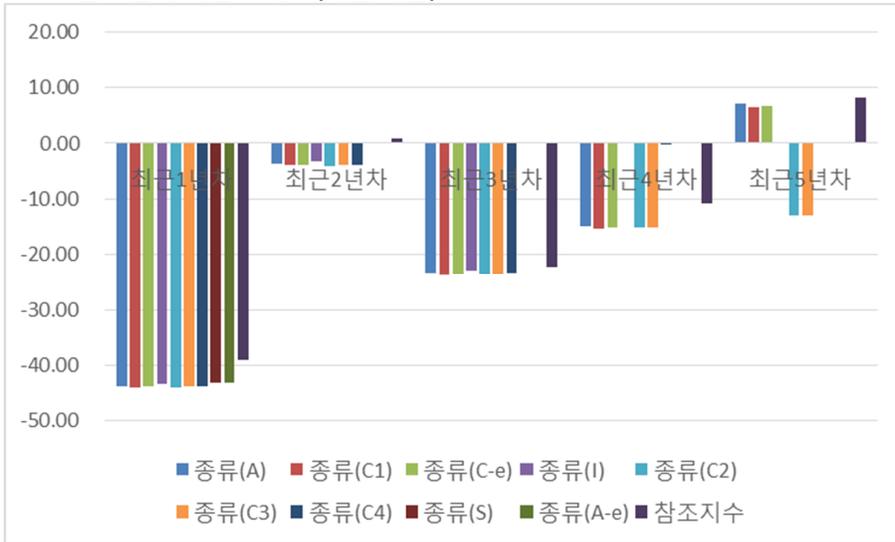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15년 12월 1일자로 (Euromoney Global Mining Index × 90%) + (Call × 10%) 에서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 90%) + (Call × 10%)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5년 9월 17일 현재, 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한국 원	0	0	0	63,928	0	0	0	0	0
	(0.00)	(0.00)	(0.00)	(95.99)	(0.00)	(0.00)	(0.00)	(0.00)	(0.00)
미국달러	0	0	0	0	0	937	0	0	0
	(0.00)	(0.00)	(0.00)	(0.00)	(0.00)	(1.41)	(0.00)	(0.00)	(0.00)
합계	0	0	0	63,928	0	937	0	0	0
	(0.00)	(0.00)	(0.00)	(95.99)	(0.00)	(1.41)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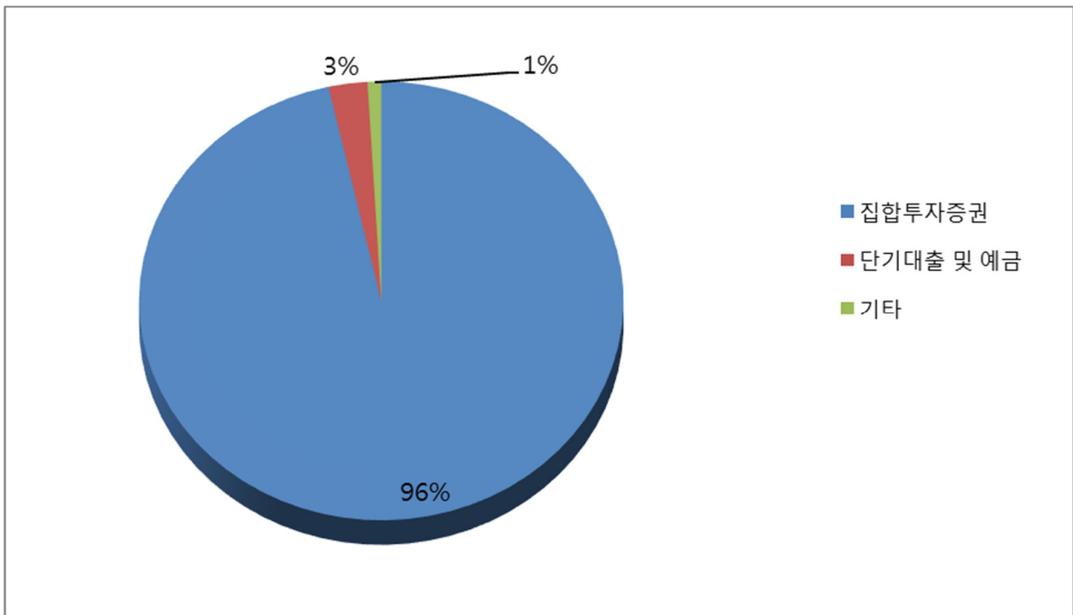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5년 9월 08일 현재, 단위:백만원)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다만, 해당 자산 구성현황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의 현황이므로, 변경 후 자산구성현황은 위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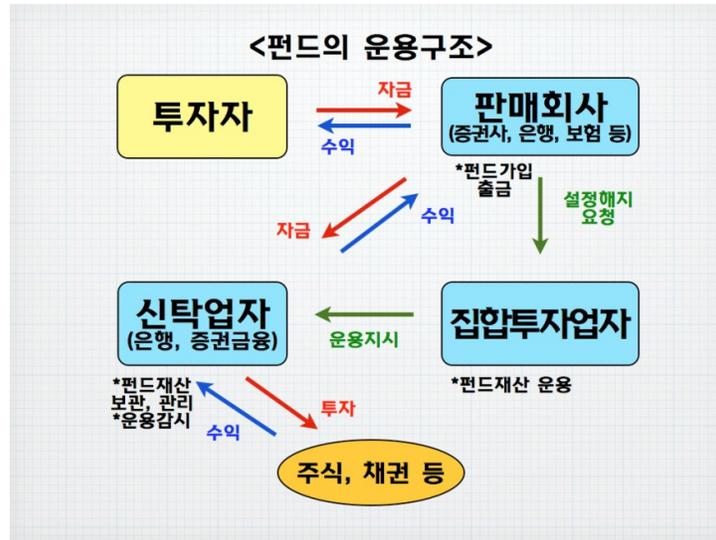


(2015년 9월 08일 현재, 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미국달러	0	0	0	61,720	0	0	0	0	0
	(0.00)	(0.00)	(0.00)	(96.50)	(0.00)	(0.00)	(0.00)	(0.00)	(0.00)
합계	0	0	0	61,720	0	0	0	0	0
	(0.00)	(0.00)	(0.00)	(96.50)	(0.00)	(0.00)	(0.00)	(0.00)	(0.00)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회사 연혁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주) 설립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 허가
자본금	145 억원
주요주주현황	BlackRock Fund Managers Limited (100%)

※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랙록(BlackRock)은 미화 4.652조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의 기관 및 개인을 대신하여 주식, 채권, 단기 금융, 대체 투자 상품 및, iShares®(ETF-상장지수펀드) 전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자문 서비스인 BlackRock Solutions®(블랙록 솔루션)의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세계 30개국에 12,2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또는 국문홈페이지 www.blackrock.co.kr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연 혁]

연혁	내용
1988	Blackstone Financial Management 설립
1992	BlackRock 으로 사명 변경
1995	PNC 사의 채권 운용 담당

1996	PNC의 개방형 무추얼 펀드 담당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추얼 펀드 부문 통합
1999	기업공개 실행 (NYSE: BLK)
2000	BlackRock Solutions®을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시
2005	State Street Research 부문 인수
2006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와 합병
2007	Quellos 인수
2009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제 7 기 (2015.03.31)	제 6 기 (2014.03.31)
현금및현금성자산	9,885	7,699
매도가능금융자산	498	498
유형자산	31	35
무형자산	0	0
기타자산	3,055	2,796
자산총계	13,469	11,029
충당부채	51	51
기타부채	1,907	2,306
부채총계	1,957	2,357

자본금	14,500	14,500
자본잉여금	793	780
이익잉여금	-3,781	-6,608
자본총계	11,512	8,672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 7 기 (2014.04.01 - 2015.03.31)	제 6 기 (2013.04.01 - 2014.03.31)
영업수익	13,945	11,828
영업비용	-11,118	-11,389
영업이익	2,827	439
영업외수익(비용)	0	-7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27	360
법인세비용	0	0
당기순이익	2,827	360
기타포괄손익	0	0
당기총포괄이익	2,827	360

라. 운용자산 규모 (2015년 9월 30일 현재 순자산 기준/억원)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수탁고	0	0	0	4,671	412	0	0	0	0	5,08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 (☎ 02-3215-1400)
홈페이지	www.keoreap.com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 (1)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다.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a.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b.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c.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2) 채권평가회사는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위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

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항 내지 4항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lackrock.co.kr)·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 증권시장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 (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 (2) 블랙록자산운용(주)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거래 환경 편의성, 가격(best price) 조달 역량 등)
- (3)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
- (4)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가능 서비스(리서치 지원, 처리시간(turnaround time), 백오피스 역량 등)
- (5) 회사 기본 정보 (조직, 인력 등)
- (6)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본/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별 매매주문을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이 그 내용을 점검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간이투자설명서
4. 투자설명서
5. 기타첨부서류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별첨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일반위험	<p>각 펀드의 성과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나 투자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 보장이나 진술은 없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펀드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수준과 과세 기준 및 조세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성과가 수익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해당 하위펀드는 통상 장래의 투자자들이 실적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운용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p>
금융시장, 거래상대방 및 업무수탁자들 위험	<p>이 투자회사를 운용·관리하는 회사들은 금융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상대방으로 행위하는 금융권 회사들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되는 경우 이와 같은 금융권 회사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이 투자회사의 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거래소는 시장위기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독조치가 이 투자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세금 변동에 따른 위험	<p>투자회사에는 소득과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단계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의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법, 조약,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회사는 그러한 세금부과에 대한 전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p> <p>세법의 제정, 본 회사의 과세상 지위, 주주에 대한 과세 및 모든 조세감면, 이러한 과세지위 및 조세감면을 받는지 여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판매된 또는 투자된 사법관할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하위펀드의 과세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사법관할 내에서 하위펀드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펀드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능력 또는 주주에 대한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은 해당 파생상품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사법관할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상품이 노출되는 시장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세감면 혜택의 제공여부와 금액은 주주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이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세무상황과 본 회사의 투자가 초래하는 조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p> <p>하위펀드가 조세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동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 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보관회사는 본 회사 또는 하위펀드에 부과된 세금 기타 부과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할 조세 당국에 납부 하였으나, 나중에 그러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지급에 대하여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장 관행(확립된 모범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하여 또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납세시스템이 부족하여, 관련 하위펀드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 이전 연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이자 및 가산금은 해당 하위펀드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 후 납부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계정에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에 해당 하위펀드에서 차감됩니다.</p>

	<p>주주들은 어떤 주식클래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게되어 그 결과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가 이익금이 아닌 자본금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여전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주주들에게 한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세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p> <p>중국에서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중국의 경제가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변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권위있는 지도가 부족하며,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좀 더 발전된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 관련 법령, 규정 및 해석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경우 이 투자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특히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로 인하여 자본증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주식클래스간 연대채무 위험	<p>이사들은 특정 주식클래스에서 발생한 제반 손익이나 비용은 해당 주식클래스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식클래스 간에는 채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어느 주식클래스와 관련된 거래가 동일 하위펀드내 다른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p>
통화위험 - 기준통화	<p>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준통화와 투자자산의 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기준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는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목적을 포함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자산의 환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문회사는 환위험을 경감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p>
통화위험 - 주식클래스 통화	<p>일부 펀드의 주식클래스는 해당 펀드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통화위험 - 투자자의 고유 통화	<p>투자자는 투자자의 자산부채가 표시되는 통화("투자자의 고유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통화위험 및 해당 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투자자의 고유통화와 해당 투자자가 투자하는 주식클래스 표시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p>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개입	<p>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일차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란을 겪고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부개입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부 관할지의 감독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은 때로 그 범위와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과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로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저해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임시 혹은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지 및/또는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그러한 제한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p> <p>각국 정부의 현재 혹은 장래의 약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투자자문회사들은 금융시장이 이러한 사유의 영향을 얼마나 더 오래 받게 될 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펀드, 유럽 경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권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 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p>
파생상품 거래 - 일반사항	<p>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 에서 정한 투자한도 및 제한에 따라 각 펀드는 시장, 금리 및 통화 위험을 헷지하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펀드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펀드와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 위험, 파생상품 유동성 부족, 파생상품 가치 변동과 해당 펀드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자산 가치 변동 간 불완전한 추적관계,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비해 더 큰 거래비용 발생 위험이 포함됩니다.</p> <p>파생상품 매입 시 펀드는 업계 표준관행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전액 조달되지 않는 방식의 파생상품(non-fully funded derivatives)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최초 및/또는 변동 증거금 자산을 예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최초 증거금 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자산은 거래상대방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예탁된 최초 증거금 자산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이나 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초과 증거금이나 담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펀드가 거래상대방에게 지는 채무 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생상품 조건은 최소 이전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변동 증거금 익스포저를 부분할 수 있는 담보를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는 이러한 최소 이전금액 한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생상품에 따른 무담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계약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고 최초 증거금 금액이 계약의 규모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또는 주식 거래에 비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해 합성 매도초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익스포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선도환을 포함한 선물 포지션과 같은 파생상품(합성 매도 포지션)을 활용하여 매수초과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추가 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이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교체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매각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의 투자제한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펀드는 법률 개정이나 예기치 못한 법령 적용으로 인하여 혹은 법원의 계약 집행불가 판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될 경우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회사로 하여금 포지션 위험 및 이러한 포지션이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투자회사는 위험관리절차를 활용합니다. 관리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최대손실 가능금액(Value at Risk, VAR)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기재된 투자제한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파생상품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에 기재된 하위펀드의 투자목적과 최근 위험관리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문서는 요청시 현지 투자자 서비스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펀드는 증권대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시 펀드는 증권대여계약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증권의 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펀드의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모든 증권대여가 담보부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대여증권에 대하여 100%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시차 발생 등) 펀드는 증권대여 계약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펀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결제 불이행 위험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나 해당 펀드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또는 증권대여계약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이러한 위험에 포함됩니다. 담보가 수반되지 아니한 파생상품 거래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발생시킵니다. 해당 펀드는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수령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완전히 담보화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정식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며 모든 승인된 거래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검토됩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와 담보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에게 안전하게 보관 위탁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장부상이 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며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증권은 보관회사의 다른 증권/자산과 독립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관회사의 파산시 미반환 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어느 펀드의 현금도 보관회사의 고유 현금 /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타 고객의 현금과 독립적으로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펀드가 무담보 채권자로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위 보관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보관회사가 반드시 보관회사와 동일 그룹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보관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기한 하위 보관회사에 예약된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 채무 위험

이 투자회사는 하위펀드 간 채무가 분리되는 엄브렐라형 구조를 가집니다. 룩셈부르크 법 상 어느 하위펀드의 자산은 다른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법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타 관할지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 일자 현재 상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들이 알고 있는 현재 혹은 장래의 불확정 채무는 없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자산의 추가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해 시장 레버리지(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총 시장 익스포저, 롱포지션 및 합성숏포지션 합산 익스포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시장의 절대 수익에 대한 방향성 견해("이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로부터 뿐 아니라 시장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 차이("이 시장이 저 시장 보다 더 낫다")로부터 절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 레버리지는 포지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시장 레버리지의 가능성과 그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동시에 합의된 가격과 일자에 당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매도가격과 재매입 가격 간 가격차가 거래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매도 가격은 통상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합의된 시장 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매매가격을 상회하게 됩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미래의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재매도 가격으로 펀드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기초증권의 매도가격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펀드가 보유한 기타 담보가액을 합한 금액이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재매입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될 때까지 시 또는 거래상대방이 증권 재매입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위험	개별 펀드는 불분명한 법률, 법률의 변경,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부재 등의 법률위험, 테러위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위험, 군사적 조치 등의 통제불가능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경제상황과 시장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기관 및 거래소는 시장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소규모 기업	소규모 회사의 증권은 대규모의 성숙된 회사들의 증권 또는 시장 평균보다 시장 움직임이 보다 과격하거나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생산라인, 시장 또는 재무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제한된 경영진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완전한 발전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많은 소규모 회사들의 주식거래의 빈도 및 거래량이 약하며 대규모 회사들의 주식보다 시장 움직임이 보다 과격하거나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의 증권은 대규모 회사들의 증권보다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며 이로 인하여 펀드 펀입주식의 순자산가치가 평균 이상으로 변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위험	주식의 가치는 매일 변동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경제성장 동향, 인플레이션율, 금리, 기업의 수익보고, 인구통계적 경향, 재해와 같은 경제전반과 정치상황뿐 아니라 개별 발행인의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머징 시장	<p>이머징 및 자본시장은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및/또는 자본시장 발전의 수준이 낮고 주가 및 통화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제/자본 시장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를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장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어떤 이머징 시장의 정부들은 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에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군 대부분에 공통된 또 다른 위험요소는 경제가 과중하게 수출에 의존하며 따라서 국제 무역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반시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금융제도가 전근대적이라는 점도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 있어 위험요소입니다.</p> <p>불리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는 수용, 물수적 과세, 국유화, 무역타결 및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과 외국투자제한 및 외환통제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장래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도 일부 이머징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p> <p>이머징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감사 및 재무 신고 관행은 선진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합니다. 성숙된 시장과 비교하여 일부 이머징 시장은 감독 정도, 규정의 집행 정도 및 투자자 활동(일정한 범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중요한 내부자 정보에 근거한 거래와 같은 관행을 포함)에 대한 감시수준이 낮습니다.</p> <p>이머징 시장에서 증권거래의 결제 관행은 선진국에서보다 더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낮은 중개인과 거래상대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 자산의 보관과 등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담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결제의 지연으로</p>

인하여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관인은 룩셈부르크 법규에 따라서 모든 해당 시장의 상응하는 은행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이머징 시장에서 등록기록원은 효과적인 정부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등록 문제로 인하여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일부 국가는 펀드와 같은 외국 단체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그 예로서 특정 국가들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정부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자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증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는 동 회사의 특정 종목의 주식에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발행인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식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펀드의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하위펀드는 처음에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추후에 동 펀드의 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재등록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없어서 펀드가 투자자로서의 특정 권리(배당을 받을 권리 또는 회사의 행위를 통지 받을 권리 포함)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펀드가 매수주문을 냈으나 추후 재등록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허용된 량의 주식의 이미 청약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펀드가 해당 시점에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펀드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이익, 자본 또는 증권매각대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일부 국가에서 상당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해지는 투자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국 송금 지연 또는 그러한 본국 송금에 요구되는 정부승인의 거부에 의하여도 동 펀드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외국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쇄형 투자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특정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은 때때로 그 순시장가치보다 할증된 시장가격으로만 취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폐쇄형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들은 동 펀드에 비례배분된 비용(관리수수료 포함)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 폐쇄형 투자회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투자회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투자는 특정의 추가 위험, 특히 증권의 거래자격과 관련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정 중국 주식의 거래는 허가된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고, 그러한 주식에 투자된 자본을 투자자들의 본국으로 회수하는 것이 때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동성과 회수성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회사는 그러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UCITS 에 적당하지 않다고 종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중국 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 증권 시장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외국환 규제로 인하여 자유로이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안화 채권 펀드, 위안화(Renminbi) 주식클래스 및 투자자 또는 펀드의 위안화(Renminbi) 거래에 사용되는 환율은 역내 위안화(CNY)가 아닌 역외 위안화(CNH)와 관련이 있습니다. CNH의 가치는 CNY의 가치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되는 외국환 통제 정책, 본국송환 규제 및 기타 외부 시장 등의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증권의 소유 및 보관과 관련하여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위 사항이 회사나 (대리인도 아니고 보관회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등록인의 장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러시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보관회사 또는 그 거래처 또는 중앙예탁기관에 보관 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시스템과 법령 및 규제 결여의 결과로 이 투자회사는 사기, 과실 또는 미미한 실수만으로도 러시아 증권에 대한 등록과 소유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자액이 순자산가액의 10%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규제된 시장으로 인정된 MICEX-RTS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합니다.

특정부문에 투자하는 펀드

하나 혹은 제한된 수의 시장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펀드들은 기타의 좀더 분산 투자된 펀드들보다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생산라인, 시장 또는 재무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제한된 경영진에 의존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위펀드는 투자자 활동과 관련된 급격한 경기순환 변동 혹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또는 특정 부분의 경기하락이 분산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보다 이러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하위펀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부문과 연관된 특정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등 천연자원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가는 비록 두 요소간 완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천연자원의 시가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금속 가격은 매우 큰 변동을 보여왔으며 이를 귀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제상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 금융, 사회, 정치적 요소에 의해 정부, 중앙은행 등 귀금속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자가 예기치 않게 귀금속을 매각하게 될 경우 이는 귀금속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금속 및 이와 관련된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에는 인플레이션 변동과 전망 및 산업/상업적 측면에서의 해당 귀금속의 수요공급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증권에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되며 이러한 위험에는 부동산시장의 불리한 환경 변화, 일반 경제 / 현지 경제 변화, 부동산 노후화, 재고 부동산의 가용률 변화, 공실률, 임차인의 파산, 주택담보 파이낸싱 비용과 조건, 부동산 운영 및 개량 비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환경법과 계획법 등)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증권 투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증권의 성과는 부동산 업종의 일반적인 성과 보다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성과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금리와 부동산가치 간에는 상반 관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금리상승시 부동산 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차입비용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부동산 회사에 대한 펀드 투자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기구에 대한 현행 세법은 복잡한 성격을 가지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펀드의 수익 및 그에 따른 과세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의 기초상품 익스포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는 상품지수의 성과를 추종함으로써 이에 투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초지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별된 상품 선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상품거래시장의 성과에 극도로 의존하게 됩니다.

후강통을 통한 투자 관련 특정 위험

“후강통”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역외펀드 투자설명서 상 “투자대상 및 투자방침”의 “후강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위험 및 후강통에 해당하는 기타 위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수반됩니다.

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통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투자대상 및 투자방침”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쿼터 잔여분이 소진되거나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통 펀드가 후강통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통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위험

2014년 11월 14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해외투자자들(RQFII 투자자들 포함)이 후강통을 통하여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결과 투자펀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통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고 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옴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통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 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 상 후강통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통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산 및 결제위험

홍콩중앙예탁기관과 중국예탁결제원은 청산 연결망(clearing links)을 구축하고, 국경간 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됩니다. 시장에서 발생한 국경간 거래의 경우, 해당 시장의 결제기관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과 거래를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결제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를 이행할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중국 증권시장의 국가 차원의 중앙 거래상대방으로서, 중국예탁결제원은 종합적인 청산, 결제 및 주식보유 인프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예탁결제원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승인하여 감독하는 위험관리 체계와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국예탁결제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낮은 확률이지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 참가자와 체결한 시장 계약에 따라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에 대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지는 책임은 청산 참가자를 도와 중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선의로서 가능한 법적 통로를 통하여 또는 중국예탁결제원의 청산을 통하여 미상환 주식 및 현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후강통 펀드의 자금회수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또는 중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전액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지 위험

홍콩증권거래소("SEHK") 및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원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신중한 위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중지하기 전에 관할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중지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관련 후강통 펀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능력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거래일

후강통은 중국과 홍콩시장이 모두 거래를 위하여 개장한 날로서 두 시장 모두에서 이에 상응하는 결제일에 은행이 개점한 날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일일지라도 후강통 펀드가 후강통을 통하여 중국 A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강통 펀드는 후강통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 중국 A 주식의 가격 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모니터링(front-end monitoring)에 따른 매도 제한

중국 규정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이전에 그 계좌에 충분한 주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해당 매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초과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즉, 주식 브로커들의 중국 A 주식 매도 주문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후강통 펀드가 보유한 중국 A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 거래일("거래일")에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 브로커(들) 각자의 계좌로 해당 중국 A 주식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에 동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후강통 펀드는 적시에 중국 A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후강통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정보기술 수용력, 위험관리 및 해당 증권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장 간의 증권 체제 및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 주식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통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통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통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증권거래소는 후강통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통을 통한 교차매매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통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주식의 자격박탈(recalling) 위험

어느 주식이 후강통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적격주식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주식은 매각될 수 있을 뿐 매수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투자자문회사가 적격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후강통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상 기금(Investor Compensation Fund)에 따른 보호 없음

후강통을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에 투자하려면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므로, 해당 중개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됩니다. 후강통 펀드의 투자자산은 홍콩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가 받은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국적 불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투자자보상기금(Hong Kong's Investor Compensation Fund)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후강통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의 경우 홍콩증권거래소나 홍콩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그곳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상 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강통 펀드들은 후강통을 통하여 중국 A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됩니다.